

법률법인 태평양

Bae, Kim & Lee

기 일 2003. 11. 28. 10:00

추심 나

사 건 2002구합33943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신천수 외 99인

피 고 외교통상부장관

부본영수

2003. 11. 27.



준 비 서 면

2003. 11.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

귀 증

법률법인 태평양

Bae, Kim & Lee

法律法人 太平 律

Bae, King, Lee

이 일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1951. 9. 8.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되고, 1954. 4. 28. 효력을 발생한 연합국과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및 1965. 6. 22. 한일 양국 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일괄 타결된 이른바 "대일민간청구권"에 포함된다는 점을 이미 확인하였습니다(1996. 10. 31.자 94헌마204 결정). 즉, 우리 정부가 위 한일청구권협정 이후 제정한 청구권자금의운용및 관리에관한법률(1966. 2. 19. 법률 제1741호로 제정됨)과 대일민간청구권신규에관한법률(1971. 1. 19. 법률 제2287호로 제정됨)에 의하여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모두 마무리지었으므로, 원고들은 더 이상 일본 정부 또는 우리 정부에 대하여 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다. 이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함에 있어서 그 사용목적으로 주장되고 있는 일본 정부 또는 우리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그 주장 자체로 인정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1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고, 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보호받아야 할 법익이 흠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에 해당됩니다.

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法律事務所 太平 律

Bae, Kim & Lee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은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제2호는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의 하나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법은 “외교관계”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교관계”를 이유로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외교관계 및 그로 인한 영향력은 구체적으로 계량화하거나 단계화시킬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정보의 공개가 외교관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를 사법부가 예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에 관한 행정부의 재량의 범위를 부여하기 위함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 “외교관계”의 범위에 관하여 행정부에게 많은 재량해석의 여지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는 긴밀한 우방관계인 한·일 양국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외교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약화시키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 바로 그 정보에 해당됩니다.

나. 정보공개법이 비공개대상으로서 “외교관계”를 정한 의의 및 그 비공개 범위

- (1)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국가와 국가 사이의 외교관계는 신뢰관계를 토대로 한 협의와 협조가 기본이 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조약 등 양국간의 합의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양국 사이에 교환된 정보와 제의 등은 모두 비밀로 유지될 것임을 전제로

법률법인 태평

Bae, Kim & Lee

교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일방의 국가가 상대방 국가로부터 제공된 또는 상대방 국가로부터 받은 정보 또는 의사를 상대방 국가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경우 그 공개한 국가는 상대방 국가와의 신뢰관계를 해침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 외교사회에서도 신뢰를 상실하여 더 이상 국제적인 외교무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가적인 손실을 입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법은 "외교관계"에 관한 문서를 비공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정보공개법 제18조 제3항은 위와 같은 고려에서 "재판장은 재판의 대상이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 중 국가안정보장, 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할 하지 아니할 사유 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다른 정보와는 다른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2) 또한, 외교관계는 이른바 "상호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어느 국가가 당사자 국가 사이의 신뢰를 훼손하면서 상대방 국가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상대방 국가는 거의 예외 없이 그와 동일한 가치가 있는 당해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당해 국가의 합리적 요구에 불응하는 방법으로 형식적인 행동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외교관행은 국제법상 'reprisal'이란 용어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느 국가가 상대방 국가 사이에 오고 간 비밀문서를 공개하여 상대방 국가의 이익을 해한 경우에는, 그

제출자료

1. 한·일협정관련 원고측 청구목록중 청구권협정과 관련된 문건(34권)

- 1 ○ 제1차 한·일회담 본회의 회의록, 제1-5차(1952)
- 3 ○ 제1차 한·일회담 청구권 분과위원회 회의록 제1-8차(1952)
- 4 ○ 제1차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자료(1950-52)
- 7 ○ 제2차 한·일회담 청구권 위원회 회의록, 제1-3차(1953)
- 8 ○ 제3차 한·일회담 본회의 회의록 및 제1-3차 한일 회담 결렬
경위(1953)
- 10 ○ 제3차 한·일회담 청구권 위원회 회의록, 제1-2차(1952)
- 15 ○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자료(1958)
- 22 ○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일반 청구권 소위원회 회의록,
제1-13차(1960-61)
- 24 ○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일반문제(1960-61)
- 25.16 ○ 제6차 한·일회담 예비교섭(1961) 전2권
- 28.19 ○ 제6차 한·일회담 제1차 정치회담(1962) 전 2권
- 31 ○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 위원회 회의록, 제1-11차(1961-62)
- 32 ○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 한·일회담 회의록
합의, 미합의점 대사작업(1962)
- 33 ○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자료 : 일본의 대미 GARIOA, EROA
채무변제(1959-62)
- 34 ○ 제6차 한·일회담 정치회담, 제2차 정치회담(1963)
- 35 ○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 청구권 관계회의
(1963)

- 27 NOV 2005 10:07 DBB KIN & LBB NO.9591 P. 3/8
- 36 ○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자료(1963)
 - 38-42 ○ 제6차 정치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 본회의, 제1-65차 (1962-64) 전 5권
 - 43 ○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자료 : 일본의 동남아 제국에 대한 배상문제(1961-64)
 - 44 ○ 제6차 한·일회담, 회담관계 각료회의 및 회담관계 제문제점 연구(1963-64)
 - 47 ○ 속개 제6차 한·일회담 : 기본관계위원회(1964)
 - 48 ○ 속개 제6차 한·일회담 : 청구권 위원회 회의록 및 경제협력 문제(1964)
 - 48.16 ○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회의 보고 및 훈령(1965) 전 2권
 - 49 ○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내용 설명 및 자료(1965)
 - 5 ○ 제2차 한·일회담 본회의 회의록, 제1-3차(1953)
 - 14 ○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 위원회 회의록, 제1-3차(1958)
 - 23 ○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 미일 평화조약 제4조(청구권관계)의 해석에 관한 미국무성 각서 공개(1961)

2. 한일협정관련 원고측 청구목록중 청구권협정과 무관한 문건(23권)

문서철명(생산연도)	주요내용
2 제1차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회의록, 제1-8차(1952)	국교정상화를 위한 기본관계 설정을 위한 한일간 협의
6 제2차 한일회담 기본관계 회의록, 제1-2차(1953)	상동
9 제3차 한일회담 기본관계 회의록, 제1차(1953)	상동
11-13 제4차 한일회담 예비교섭(1956-58) 전3권 v.1 경무대와 주일대표부와의 교환공문(1956-57) v.2 1957년도 v.3 1958년도	한일회담 예비교섭 관련, 경무대와 주일대표부간 교신문서 예비회담 회의록 및 회의결과보고, 미측과의 협의내용, 일 정부 생산 문서 등 포함 제4차 한일회담 준비교섭 관련 훈령, 회의결과 보고 및 회의록
16 제4차 한일회담 교섭 및 훈령 (1958-60)	상동
18 제4차 한일회담 본회의 회의록, 제1-15차(1958-60)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간 현안 토의
21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본회의 회의록 및 사전교섭 비공식회담 보고(1960-61)	예비회담 개최를 위한 시기, 회의 진행 절차문제 등 사전교섭 보고와 일본내 여론동정, 일본 정부의 입장 등 파악 보고
27 제6차 한일회담 본회의 회의록 및 종합보고(1961-62)	한일간 현안 토의 및 본부 보고
30 제6차 한일회담 제1차 정치회담 이후의 교섭(1962)	현안 해결을 위한 양국간 접촉
45 속개 제6차 한일회담 : 본회의 개최를 위한 예비교섭(최규하 본부대사 방일 질책보고) 및 본회의 (1963-64)	상동

문서철명(생산연도)	주요내용
46 속개 제6차 한일회담 본회의 수석대표간 비공식회의 :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합, 제1-21차(19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담진행 방식, 경제관계 등의 내용 ○ 어업 관련 훈령
47 속개 제6차 한일회담 현안문제에 관한 한국측 최종입장(1963-64)	한일회담 현안문제에 대한 아축의 입장 등
51 제7차 한일회담 본회의 및 수석 대표 회담(1964-65)	회담재개를 위한 예비교섭, 본회의 (제1-3차)와 수석대표회담(제1-16차) 관계로서 회담재개 관련 한일 양측 입장 현안문제에 대한 의견과 훈령, 회의경과 등
52 제7차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회의록 및 훈령(1964-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13차의 기본관계위원회 회의 개최, 회의록 작성 ○ 제2차회의시 기본관계 문제에 관한 한일 양측 기본입장 및 요강안 제시 - 조약의 형식, 명칭, 전문·본문· 결문작성 요령 등 ○ 제7차회의시 양측의 기본조약 초안 교환 ○ 제9차회의시 일측 1차 수정안 제시 ○ 제10차회의시 한국측 2차초안 제시, 일측의 2차 수정안(영문안) 제시 ○ 제11차회의시 일측의 3차 수정안 제시 ○ 제12차회의시 일측은 통상 항해 조약에 추가할 경과규정 초안을 제시 ○ 제13차회의시 양측은 그간 협의 결과를 정리, 기본관계조약 공동초안 작성
53.5X 제7차 한일회담 법적지위 위원회 회의록 및 훈령(1964-65) 전2권 v.1 제1-24차(1964-65) v.2 제25-40차(1965)	양국간 교섭내용 및 정부대표 훈령

문서철명(생산연도)	주요내용
17 제4차 한일회담 대표단 임면관계 (1958-60)	제4차 한일회담 대표단의 임명건의, 임명통보, 변경 조정 등 아측 대표단의 임명·변동사항과 일측 대표단 명단 보고 문건
19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제일한인 재산반입문제(19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일교포 재산반입에 관한 재무·상공부장관 공동담화문 ○ 제일교포의 재산 및 자본반입 촉진을 위한 일본과의 협상을 의뢰하는 재무부장관 등의 외무부장관 앞 공문
20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대표단 임면관계(1960-61)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의 대표 선정원칙, 임명건의, 대표보강·변경 등 아측 대표단 임면관계 문건 및 일측대표단 명단문서
37 제6차 한일회담 대표단 임면관계 (1961-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8-64년간 한일회담 대표단 임면 관련 문서 ○ 법적지위위원회 민단대표 참여문제 - 거류민단 총단장을 위원회 고문으로 위촉하되 한일회담에는 참석치 않도록 함.
50 제7차 한일회담 대표단 임면관계 (1964-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회담 한국측 참여자명단(외무부, 주일대표부, 관계부처) ○ 주일대사 경질에 따른 수석대표 임면 - 배익환 대표에서 김동조 대표로 교체 ○ 이규성 참사관의 공사칭호 부여 ○ 한일회담 일측대표단 명단(약력포함)

준 비 서 면

사 건 : 2002구합 33943호
원 고 : 신 천 수 외99
피 고 : 외교통상부 장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가 2003. 11. 27. 자로 귀 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 중, 원고들이 더 이상 일본정부 또는 우리 정부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은 우리 헌법상 용납되지 않는 주장이라는 사실은 이전의 준비서면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피고는 무엇을 근거로 위와 같이 자국민이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단언하는지 납득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점은 관련 재판과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여 보아야 하는 부분이며, 오히려 이를 위해서도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고로 원고와 같은 피해자 중 일부는 일본 법정에서 소송도중 판결을 통해 승소한 바도 있고, 해당소송에서 피고와 화해를 통해 늦으나마 손해배상을 받고 있음을 부언하여 둡니다.

2. 피고 주장의 비공개사유와 관련하여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는 피고 주장의 핵심적 근거는 '일본정부'가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만약 위와 같은 일본 정부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하게 되면 긴밀한 우방관계인 한일 양국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외교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일본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하여 이 사건 공개대상 정보의 비공개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우리나라가 국제외교사회에서 큰 비난을 받게 됨은 물론,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 외교당국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는 낙인이 찍히게 될 우려가 있으며, 직접적인 당사자인 일본 외교당국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게 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으로서 우리나라의 중대한 이익이 담긴 비밀문서 중 일부가 일본정부로부터 공개될 수가 있어 결과적으로 중대한 국익이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한나라의 외교관계의 기본이념이 자국민 보호라는 근본 취지를 몰각한 것이며, 또한 일본정부의 비공개 요청이 우리 헌법질서 상 용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도외시한 것이며, 나아가 이는 일본 정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그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여야 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그 어느 것도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나. 일본 정부의 비공개 요청이 가지는 근본적 문제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제강점하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한반도와 일본사이

에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제강점기에 대해 일본은 진정으로 '사죄'하고 이에 걸 맞는 '보상'을 하여 더 이상 과거사로 인해 한일간의 미래가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하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일제의 강점이 합법적이고 조선인의 총의에 의한 것으로 일제강점으로 한국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 받아야 할 청구권이 있다는 '역청구권'을 주장하며, 일제강점에 대한 사죄는커녕 보상요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태도로 한일협정체결에 임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후 일본정부는 1965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의 취약한 정통성과 동서냉전의 한가운데에서 발휘되는 미국의 압도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국교교섭을 서둘러 결국 한국정부가 자국민에 대한 '외교보호권'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 대가로 '경제협력자금'을 제공한 것이 이른 바 한일협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일협정 관련 문서가 공개되면 일본 법정에서 원고들과 같은 일제 피해자들의 채권에 대한 채무변제로 자금을 제공하였고, 한국정부의 대위변제에 의해 피고의 채무는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더 이상 성립할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재일한국인과 같이 당시 협의의 대상도 되지 않는 많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일본사회의 전면에 부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일본 정부는 한일협정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도록 요구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태도는 같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인 독일이 현재에도 나치즘의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계속하며 잘못된 과거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과 극히 비교되는 바, 일본 정부의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 요청이 얼마나 몰염치한 것인지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일본정부의 요청은 우리 헌법정신에도 어긋나 부당함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한일협정관련 문서의 비공개 요구에는 일제 강점의 합법성 주장(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정면으로 부정)과 아울러 피해자들의 권리에 대해 분단정부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그 정부로 하여금 외교적보호권을 상실하게 한 한일협정방식을 옹호하여 일제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이를 북한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관철하려는 부당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 정부의 요청은 우리 헌법상 보호받을 수 없는 이익을 지키려는 의도 하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에 대해 외교관계상의 불이익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 헌법질서의 근본을 해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한일협정방식의 문제가 있음이 들어 났다면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여 국제적 상식과 인권법의 기준에 맞는 제대로 된 국제적 룰을 만들어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지, 냉전하의 어부지리를 그대로 열겠다는 일본의 의도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라. 일본 정부의 대응에 따라 중대한 국익손상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

피고는 일본 정부의 비공개요구가 무시될 경우 일본 정부의 대응으로서 우리나라의 중대한 이익이 담긴 비밀문서 중 일부가 일본정부에 의해 공개될 수도 있어 결과적으로 중대한 국익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일본정부에 대한 외교적 결례일 뿐 만 아니라, 일본정부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대응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는 것인지, 우리나라의 중대한 이익이 담긴 비밀문서 중 어떤 문서가 일본정부에 의해 공개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이 없어 이를 이유로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마치 있지도 않는 일본의 협박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다고

자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3. 외교문서 분류 주장과 관련하여

한편 피고는 원고들 청구 문서 중 청구목적과 관련된 대일민간청구권 관련문서와 관계없는 문서를 분류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의 분류는 지극히 임의적인 것으로 청구권협정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23권의 문서 역시 대부분 한일회담 기본관계에 대한 교섭자료로서 일제강점기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교섭 자료인 바, 원고들의 청구권행사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일제 강점기의 합법성을 인정할 경우 당시 입법의 형식을 빌려 자행된 강제동원은 정당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 불법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되는 바, 그에 따라 청구원인이 대폭 달라지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따라서 이들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회의록을 비롯한 문서들도 역시 공개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피고 주장을 살펴보면 과연 우리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지, 일본 정부를 옹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지 근본적인 회의가 듭니다.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오히려 본건 정보는 시급히 공개되어 일반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함은 물론 원고들의 권리행사를 막는 더 이상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2003. 12. .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진 국

서울행정법원 제3행정부 귀 중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3-2 범어빌딩 4층 대표전화. (053) 743-0031 FAX. (053) 753-6963

(법무법인 내일)
다경상(내일)

회	송달일자	사무원	사무장	사무국장	주심변호사	송무부장
람	04.2.19		김성호		김진국	이성
	확정일자					
	04.3.4					

서울 행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2구합3394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별지 원고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진국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최봉태

피 고 외교통상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문강배, 허보열

변 론 종 결 2004. 1. 9.

판 결 선 고 2004. 2. 13.

주 문

1. 피고가 2002. 9. 23. 별지 공개허용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공개청구 목록 기재 문서들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공개대상목록 기재 문서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그 밖의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2. 9.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공개청구목록 기재 문서들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원고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강점기에 군위안부, 근로정신대, 군인, 군속, 노무자 등으로 강제동원되거나,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의 일본기업에서 강제근로를 함으로써, 또는 우키시마마루호 폭침, 원자폭탄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 및 그 유족이라고 하면서 2002. 9. 5. 피고에게 1952.부터 1965.까지 사이에 있었던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회담 관련 회의록 등 별지 공개청구목록 기재 문서들(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문서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2. 9. 23. 그 공개를 거부한(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내용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일본과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제기하려고 준비중인데, 일본과 일본기업은 원고들이 입은 피해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함과 아울러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1965. 6. 22. 체결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청구권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우리 국민의 일본이나 일본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에 관한 그러한 주장이 과연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문서를 통하여 청구권협정의 경위 등을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으니, 이에 반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본안전항변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문서의 공개를 통하여 보호받을 이익이 없거나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본안에 관하여는, ① 이 사건 문서는 한일회담의 최종결론에 이른 의사결정과정과 내부검토단계의 정보로서 기본적으로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여부는 청구권협정 및 그 부속서인 합의의사록에 의하여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며, 청구권협정이 있는 후 정부가 우리 국민의 일본에 대한 민간청구권에 관하여 보상을 마쳤으므로, 이 사건 문서의 공개가 불필요하거나 원고들이 그에 의하여 실제로 보호받을 이익이 없고, ② 이 사건 문서는 일본에 대한 민간청구권 외에 어업 및 평화선, 문화재, 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협의사항들도 포함하고 있고 여기에는 양국의 심각한 입장 차이와 유리한 협상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 등이 담겨져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양국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반일, 반한 감정을 일으킬 수 있으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국제외교관례상 이와 같은 문서는 당사국간에 협의를 통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문서에 관하여는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일본 정부도 이를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음은 물론 북한과의 수교교섭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들어 우리 정부에 비공개를 요청한 바 있어 우리나라가 이를 공개할 경우 국제관계에서 국가적 신뢰가 크게 실추되는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문서는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1조, 제6조 제1항), 이와 같은 입법목적 및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라 할 것이므로,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국민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문서의 공개를 통하여 실제로 어떠한 이익을 얻거나 보호 받을 수 있는지와 관계 없이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공지의 사실 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5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1 내지 3, 을제7, 8,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유의상의 증언, 이 법원의 비공개문서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한일회담의 경과 및 이 사건 문서의 구성

1951. 10. 21. 예비회담을 거쳐 1952. 2. 15. 제1차 한일회담 본회의 개최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7차례의 본회의와 이에 따른 수십 차례의 예비회담, 정치회담 및 각 분과위원회별 회의 등을 거쳐, 1965. 6. 2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청구권협정, 어업에 관한 협정,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 4개의 부속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문서는 그 과정에서 작성된 각 회의록, 양국의 교신서류, 우리 정부와 주일 대표부의 교신서류, 교섭방침에 관한 지시 및 훈령, 교섭 내용이나 전략에 관한 각종 보고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청구권협정의 주요 내용

청구권협정은 제1조에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10년간에 걸쳐 3억 달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2억 달러의 차관을 행하기로 한다는 내용과 아울러 제2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또한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은 위 제2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a) "재산, 권리 및 이익"이라 함은 법률상의 근거에 의거하여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모든 종류의 실제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양해되었다.

(g) 동조 1에서 말하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회담에서 한국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청구 요강"(소위 8개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동 대일청구요강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위 합의의사록에 적시된 대일청구 8개 요강에는, 일본으로 반출된 지금(地金) 및 지은(地銀), 조선총독부 체신국에 대한 각종 저금, 채권 등, 1945. 8. 9. 이후 일본인이 한국의 은행으로부터 인출해간 예금액, 대체 또는 송금된 금품, 한국 법인의 재일 재산, 한국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일본의 유가증권, 은행권 등과 함께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한국인의 대 일본국정부

청구 은급(恩給)관계, 한국인의 대 일본인 또는 법인 청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3)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관한 논란

청구권협정 제2조와 합의의사록이 위와 같이 정하고 있음에 관하여, 우리 정부의 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한 것인지, 혹은 우리 국민의 일본에 대한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도 포기된 것인지(그리고 그것이 포기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어 왔는데,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우리 국민에 대한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거나 혹은 우리 정부의 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한 것일 뿐 우리 국민의 일본에 대한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은 포기되지 않은 것이고 포기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입론하여 우리 국민의 일본에 대한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입장과 그와 달리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우리 국민의 일본이나 일본기업에 대한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해석하는 입장이 대립하였고, 우리 정부는 국민의 일본에 대한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동원되었던 원고 김분선, 황금주 등이 2000. 9. 18.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일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담당 재판부에 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는 등 현재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4) 정부의 보상조치

정부는 1966. 2. 19.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1945년 8월 15일 이전까지의 일본국에 대한 민간청구권은 이 법에서 정하는 청구권자금 중에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5조 제1항), 1971. 1. 19.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보상대상이 되는 청구권의 범위와 신고기간, 증거조사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1974. 12. 21.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보상 금액 및 방법 등을 규정하였는데, 위 각 법률규정상 피징용사망자와 재산

권을 보상대상으로 할 뿐 피징용부상자, 군위안부, 원자폭탄 피해자 등은 그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신고기간도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시행 60일 경과 후부터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보상금액을 피징용사망자에 대하여 1이당 30만원 예금·채권

등 재산에 대하여는 일본국 통화 1엔당 30원으로 하여 보상하도록 하였는바,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피징용사망자 8,552명에 대하여 약 25억 7천만원, 예금·채권 등 재산 74,967건에 대하여 약 66억 2천만원, 합계 약 91억 9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위 각 법률은 1982. 12. 31 모두 폐지되었다.

정부는 그 후 1990. 원폭피해자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원자폭탄 피해자들에 대한 진료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1993. 6.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하여 생존한 일본군위안부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제공하고 있다.

(5) 이 사건 문서의 공개 여부에 관한 피고의 내부결정

1993. 7. 28. 제정된 '외교문서보존및공개에관한규칙'에는 생산 또는 접수된 후

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1993. 10.경 이 사건 문서의 공개 여부를 결트 하면서 외교관계에 따라 당사국인 일본 정부의 의견을 물었는데, 일본 정부가 장기간에 걸친 교섭기록이므로 일반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일괄 취급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되 일본의 외교기밀에 관한 중요 사항이 담겨 있어 일본 정부도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상호 신뢰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공개 여부를 신중히 심사하고 공개하는 경우에도 가급적 양국이 동시에 공개함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내 오자, 피고는 공개로 인하여 일본과 외교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1994. 1.경 이 사건 문서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결정하였고, 그 후 1997. 1.경 일본정부는 북한과 일본의 수교교섭에 장애가 된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문서를 당분간 공개하지 말 것을 다시 요청하였으며, 그러한 입장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6) 원고들의 손해배상소송

일부 원고들은 아래 표 내역과 같이 일본과 일본기업을 상대로 군위안부, 근로정신대, 군인, 군속으로 강제동원되거나 일본기업에서 강제근로를 함으로써 또는 우키시마마루호 폭침 등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였다.

제소 원고	제소일	제소 법원	상대방	사유
51.김분선, 60.황금주	2000. 9. 18.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일본	군 위안부
62.양금덕, 63.김혜옥	1999. 3. 1.	나고야지방법판소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주)	근로정신대
64.나화자, 65.김정주, 66.성순님, 70.박소득	2003. 4. 1.	도야마지방법판소	일본, (주)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제소 원고	제소일	제소 법원	상대방	사유
71.진승렬, 72.문병식, 73.김동철, 74.서준호, 75.박장수, 78.박진주, 80.김두진	1992. 8. 25.	교토지방법재판소	일본	우키시마다트호 폭찰
94.이근목, 95.이병목	1995. 12. 11.	히로시마지방법재판소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주)	강제징용
91.정창희, 92.정상화, 93.김돈영, 94.이근목, 95.이병목	2000. 5. 1.	부산지방법원	미쓰비시중공업(주)	강제징용
1.신천수, 2.여운택	1997. 12. 24.	오사카지방법재판소	일본, 신일본제철(주)	강제징용
3.이상구	1995. 9. 22.	도쿄지방법재판소	일본, 신일본제철(주)	강제징용
11.이의도	1995. 5. 10.	도쿄지방법재판소	일본	B,C급 전범 으로 돌림
59.이순덕	1992. 12. 25.	야마구치지방법재판소 시모노세키지부	일본	군 위안부
12.나철용, 13.오행석, 14.김기호, 16.최순주, 17.김문영, 31.곽종석, 32.오시남, 33.한형복, 34.전병설, 35.최용수, 36.장근영, 37.김행진, 40.조무연, 47.윤옥중 79.임서운	2001. 6. 29.	도쿄지방법재판소	일본	군인, 군속
38.이병주, 39.이희백	2003. 6. 12.	도쿄지방법재판소	일본	군인, 군속
18.박매자, 19.조영순, 20.송건태	2000. 11. 28.	서울지방법원	대한민국	군인, 군속 사망자 유골인도청구
41.이금주, 42.노정희, 43.오병익, 44.오병권, 45.정화근, 46.노동호	1993. 6. 30.	도쿄지방법재판소	일본	군속

나. 판단

(1)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제3조, 제6조), 이 사건 문서가 한일회담의 최종결론에 이른 의사결정과정과 내부검토단계의 정보라 하여 비공개대상으로 할 법률상의 근거나 합리적 이유는 없다(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그와 같은 단계의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장차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여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미 최종결론이 난지 30여년이 경과한 이 사건 문서는 이에 해당하지 한다).

그리고 청구권협정 및 합의의사록의 내용만으로는 원고들의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여부에 관한 합치된 해석이 어려워 많은 논란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조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조약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그 문언의 의미를 밝힘으로써 당사국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고 여기에 조약 체결시의 역사적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며 조약 문언의 해석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조약의 준비문서도 해석을 위하여 이용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권협정 해석의 보충적수단으로서 이 사건 문서를 이용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문서의 공개가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또 정부가 앞서 본 보상관련 법률에 의하여 이미 마쳤거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일본강점기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피해 국민 일부에 대한 그리고 피해의 일부에 대한 보상에 그친 것이므로, 그러한 보상이 행하여졌다고 하여 그 보상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국민이 더 이상 일본이나 일본기업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되지는 아니한

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보상 등을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문서의 공개를 통하여 보호받을 실제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이 사건 문서를 보충적 수단으로 삼아 청구권협정의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원고들의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장차의 판단 사항일 뿐이다).

(2) 한편 이 사건 문서에는 한일회담 교섭과정에서 제기된 양국의 여러 현안에 관한 구체적 주장 및 대응 내용, 교섭방침에 관한 지시 및 훈령, 교섭전략 등 우리나라와 일본의 외교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국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장래에도 그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공개를 보류하여 달라는 일본정부의 요청 자체가 외교관계상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외교관계에 따르거나 국제적 신뢰관계 유지를 위하여 당사국인 일본의 요청을 존중하는 것도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고,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은 특히 전문적 판단을 요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피고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함께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문서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내용을 이루면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이 되는 기본권이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1조, 제10조, 제21조, 제34조 제1항 참조)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정보공개법이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은 위와 같은 알 권리의 성격에 비추어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한도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국민이 입게 되는 구체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국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7

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문서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 권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원고들이 이 사건 문서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할 것이고, 과연 그러한지 여부는 이 사건 문서의 내용, 공개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그에 관한 원고들의 구체적 이익 등과 피고가 공개를 거부할 사유로서 드는 외교관계 등에의 영향, 국가이익의 실질적 손상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건대, 이 법원의 비공개문서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문서 중 순번 36번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자료'에 1963. 3. 5.자 외무부의 "한일회담 일반청구권문제"라는 문서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는 제1차부터 그때까지의 한일회담 경과, 우리 정부가 제시한 청구항목, 이에 대한 일본측의 반응, 청구권협정의 세목에 관한 토의 등이 정리되어 있는 사실, 그 이후에 작성된 순번 48번 '속개 제6차 한일회담 :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및 경제협력 문제', 순번 55, 56번 '제7차 한일회담청구권관계회의 보고 및 훈령'(전2권), 순번 57번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내용 설명 및 자료'에도 우리 국민의 개인적 청구권의 해결에 관한 양국의 인식을 표시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순번 48, 55, 56, 57번 문서에는 개인적 청구권의 해결과 무관한 사항도 많이 포함되어 있으나, 순번 36번 문서와 달리 관련 부분을 따로 특정하기 어렵다), 그 외의 문서들에도 우리 국민의 개인적 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대부분 순번 36번 문서 중 한일회담 일반청구권문제에 정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순번 36번 문서 중 한일회담 일반청구권문제와 순

번 48, 55, 56, 57번 문서들은 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들의 일본이나 일본기업에 대한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유력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고(그 외의 문서들은 따로 공개하지 않더라도 위 문제의 판단에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나이가 매우 많아 그들에게 개인적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는 기간이 그리 오래 남지 않았으며, 위 문서들은 생산된지 30년이 훨씬 지나 당시의 외교 기밀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공개 대상으로 하여 그 비밀성을 유지하여야 할 객관적 필요성이 크게 감소하였다고 볼 것인 데다가(외교기밀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비공개 문서로 유지하여야 한다면 생산 또는 접수된 후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정한 외교문서보존 및공개에 관한규칙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 위 문서들의 공개로 인하여 일본과의 외교관계에 있어 다소의 불편이 따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일관계의 역사적 특수성에 비추어 이는 국가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그렇다면 원고들 중 소송의 방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일본 강점기에 입은 피해에 대한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익의 보호를 구한 사람들은 그 소송에서의 청구인용 여부와 관계 없이 위 순번 36번 문서 중 한일회담 일반청구권문제와 순번 48, 55, 56, 57번 문서들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하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한편 이를 비공개함으로 인하여 보호되는 국익은 그들의 위와 같은 이익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크지는 않다고 볼 것인바, 결국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정보의 부분공개를 정한 정보공개법 제12조에 따라 위 문서들을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 이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 문서들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고, 다만 그 밖의 원고들은 일본 강점기의 피해자라고 주장할 뿐 위와 같은 특별하고 구체적

인 이익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들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별지 공개허용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의 별지 공개대상목록 기재 문서들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그 밖의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후단(전부 패소한 원고들에 대하여), 제10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영호 _____

 판사 김관중 _____

 판사 조철호 _____

항 소 이 유 서

사 건 : 2004 누 4682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 신 천 수 외98

피 고 : 외교통상부장관

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문서에는 한일회담 교섭과정에서 제기된 양국의 여러 현안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및 대응 내용, 교섭방침에 관한 지시 및 훈령, 교섭전략 등 우리나라와 일본의 외교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국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장래에도 그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공개를 보류하여 달라는 일본정부의 요청 자체가 외교관계상 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외교관례를 따르거나 국제적 신뢰관계 유지를 위하여 당사국인 일본의 요청을 존중하는 것도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여 이 사건 문서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제한은 알 권리의 성격에 비추어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한도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국민이 입

게 되는 구체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국익의 정도를 비교형량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문서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 권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원고들이 이 사건 문서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할 것이고 과연 그러한 지 여부는 이 사건 문서의 내용, 공개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그에 관한 원고들의 구체적 이익등과 피고가 공개를 거부할 사유로서 드는 외교관계등에의 영향, 국가이익의 실질적 손상 정도 등을 두루 고려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문서 중 순번 36,48,55,56,57번 문서들은 청구권 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들의 일본이나 일본기업에 대한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유력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의 나이가 매우 많아 그들에게 개인적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그리 오래 남지 않았으며 위 문서들은 생산된 지 30년이 훨씬 지나 당시의 외교기밀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비공개대상으로 하여 그 비밀성을 유지하여야 할 객관적 필요성이 크게 감소하였다고 볼 것인데(외교기밀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비공개 문서로 유지하여야 한다면 생산 또는 접수된 후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외교문서보존및공개에관한규칙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과가 됨), 위 문서들의 공개로 인하여 일본과의 외교관계에 있어 다소의 불편이 따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일관계의 역사적 특수성에 비추

어 이는 국가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 가운데 소송의 방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일제 강점기에 입은 손해에 대한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익의 보호를 구한 사람들은 그 소송에서의 청구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위 5개 문서들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하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한편 이를 비공개함으로 인하여 보호되는 국익은 그들의 위와 같은 이익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크지는 않다고 볼 것인 바, 결국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12조에 따라 위 문서들은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 문서들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고, 다만 그 밖의 원고들은 일제 강점기의 피해자라고 주장할 뿐 위와 같이 특별하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들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와 같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부당합니다.

(1) 원고들은 모두 일제 강점기의 피해자들로서 이 사건 문서의 공개에 대해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사건 원고들은 일제 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대표들로서 피해자단체 혹은 소송단의 회원들이며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가해자인 일본 및 일본기업에 대해 사죄 및 배상을 구하며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 소송의 방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일제 강점기의 피해에 대한 개인적인 손해

배상청구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익의 보호를 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원고들만에 대해 특별하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을 한 것은 사실에 반하는 것입니다.

(2) 이 사건 문서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일본측의 요구는 우리 헌법질서상 수용할 수 없는 이익을 기도하는 것이고, 이러한 요구에 대해 수용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 주장한 준비서면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결론만을 말씀 드리면 일본측의 비공개요구는 일제강점 가해사실에 대한 역사적 청산에서 한민족공조를 막아 분단의 어부지리를 북한과의 국교교섭과정에서도 누리겠다는 것이며, 이는 북일과의 교섭에서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일제강점기가 합법적 지배여부라는 점에서도 그 부당성을 알 수가 있는 바, 이는 결국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우리 헌법 질서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이익을 기도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고 이러한 일본측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수용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이익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3) 이 사건 문서는 원고주장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것들로 원심에서 공개가 결정된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심은 원심이 인정하는 문서외에는 따로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원고들의 일

본이나 일본기업에 대한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에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청구하는 그 이외의 문서들은 예를 들어 일제의 관계법령에 의해 징용된 경우 이것이 불법행위로 구성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밝힐 수 있는 자료들 및 청구권협정의 보충적 해석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교섭과정에 대한 자료들로서 결국 원심이 인정한 단순히 청구권과 관련된 부분만이 공개됨으로 인해 원고들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데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4) 피고의 비공개 결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최근인 2004. 3. 26. 일본국의 니가타지방법원은 제2차 세계대전당시 강제연행 당하였던 중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 등 12명이 일본 정부와 니가타시 항만업체 린코코퍼레이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동자 1인당 800만엔씩 모두 8800만엔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중국인 피해자들의 승소배경에는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중국정부의 많은 노력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자국민 보호는 어느 정부든 그 존립의 기초일 뿐만이 아니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 질서하에서는 단순히 막연한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소송과정에서 가해자인 일본국 및 일본 기업은 다름아닌 원고가 체결한 청구권협정을 원용하여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기각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본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 스스로 원고들이 가진 불가침의 권리를 침해한 결과가 되는 것인 바 이러한 문서조차 주권자이며 피해자들인 원고들에게 공개조차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명국의 법 감정에 현저히 반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상으로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3. 결국 원심의 판단은 결국 일본 정부의 비공개 요구가 가지는 부당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체성이 결여된 막연한 외교상의 이익, 혹은 국가 이익을 들어 체결된 지 30년이 훨씬 넘는 이 사건 문서들에 대해 비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마땅히 파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4. 3. .

위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 일

담당변호사 최 봉 태

서 울 고 등 법 원 귀 중

공 증 인 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3-2 범어빌딩 4층 대표전화. (053) 743-0031 FAX. (053) 753-6963

대리인상호변경신고서

사 건 : 2002구합 33943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 신 천 수 외 99

피 고 : 외교통상부장관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종합법률사무소가 금번 법무법인 정원종합법률사무소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므로 이진 상호변경 신고를 합니다.

첨 부 서 류

1. 등기부등본

1통

2003. 09. .

위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원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 희 철

서울 행정 법 원

귀 중

공 증 인 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3-2 범어빌딩 4층 대표전화: (053) 743-0031 FAX: (053) 753-6963

대리인사임신고서

사 건 : 2002구합 33943호
원 고 : 신 천 수 외 99
피 고 : 외교통상부장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 대리인은 사정에 의하여 본건 대리인 자격을 사임하게 되었기에 이견 사임 신고합니다.

2003. 12. .

위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원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 희 철

서울 행정 법 원

귀 중



공 증 인 가

법무법인 삼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3-2 범어빌딩 4층 대표전화: (053) 743-0031 FAX: (053) 753-6963

참 고 자 료 제 출

사 건 2002구합 33943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신 천 수 외 99
피 고 외교통상부장관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소송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참고자료를 제출합니다.

아 래

- 1. 2003. 11. 27.자 신문기사 1통
- 1. 언론.기사 모음(www.truelaw.net) 1통

2003. 11. .
위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 일
담당변호사 최 봉 태

서울행정법원 귀 중



법무법인 삼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3-2 범어빌딩 4층 대표전화. (053) 743-0031 FAX. (053) 753-6963

참 고 자 료 제 출

사 건 : 2002구합33943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 신 천 수 외 99명
피 고 : 외교통상부장관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참고자료를 제출합니다.

아 래

- | | |
|-----------------------------|----|
| 1. 참의원예산위원회회의록(1991. 8. 27) | 1통 |
| 1. 일본신문기사(1997. 10. 29.-30) | 2통 |
| 1. 참의원예산위원회회의록(2001. 3. 22) | 1통 |
| 1. 참의원예산위원회회의록(1991. 9. 5.) | 1통 |

- 이상 -

2004. 1 . .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 일

담당변호사 최 봉 태

대구지방법원

귀중



법무법인 삼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3-2 범어빌딩 4층 대표전화. (053) 743-0031 FAX. (053) 753-6963

증인 유의상 반대신문사항

(주신문 1항 관련)

외 망향

PO: 일본인에게 영문 리까지 줘야

주요 신중대사관 1년

관련 자료 2년

1. 증인은 이 사건 정보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잘 알고 있는가요.

2. 이 사건 정보는 정보내용에서 그 비공개가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일본 ^{외 망향} _{수면무려}

정부가 비공개를 요구하여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하는가요.

중요자료

(주신문 2-4항 관련)

1. 1993년 제정된 외교문서보존 및 공개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생산 접수

후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는 다음 해 1월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O

2. 1993년 10월 외교통상부내의 문화협력국에서 한일수교회담 관련문서의

공개 여부를 검토할 당시 증인은 참석을 하였나요. 참석하지 않았음

3. 당시 공개여부가 검토된 한일수교회담 관련 문서 중 우리 정부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미리 결정한 문서는 특별히 있지 아니

하였지요. 보통국에서 결정함

3-1. 만약 있었다면, 원고들이 청구하는 이 사건 문서 중 어느 것이 해당하

는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밀은 아니다.

1년제에 준함

4. 한편 그 당시 아시아태평양국이 일본과의 외교분쟁을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였다는데 누가 언제 무슨 이유 및 근거로 어떤 외 인용특이
교분쟁이 발생한다고 주장을 하였나요. 상위자가 결정함 93.10.26 그 당시에도 의견은
동시에 있었음 특이

5. 또한 관련 국가와 협의 후 공개를 하자고 주장을 누가 하였나요. 특이

6. 이와 관련된 물적 증거는 무엇이 있나요. 국제관계상 - 각당자 X

특이일 있는데 공개함

(주신문 6항 관련)

1. 외교통상부에서는 그 동안 일본 외교부와 한일수교회담문서의 공개에 대해 협의를 하였다는 언제부터 누가 먼저 협의를 요청했고 이와 관련하여 어떤 물증이 있나요?
(3번) 1976. 9월 24일 - 1977. 12. 2. 협상시 기록 부록.

2. 당시 일본이 관련 문서는 일본의 외교기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는데 언제 어디서 누가 그런 요청을 했다는 것인가요?
1977년, 12월 2일

3. 문서의 공개여부는 개별 국가의 주권에 관련된 사항이고 개별 국가의 주권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하는 것이 외교의 기본적 예의인데 국제적 예의에 어긋나게 일본측이 정말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분명히 요구를 하였다는 것이며 그 증거는 무엇인가요?
당시 공개 당시 협의는 해산나

만약 요구를 하였다면,

3-1. 일본측은 한일수교회담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그 문서중 일부분에 대해 공개하지 말라고 하던가요?
1번으로 하신다.

3-2. 당시 일본측이 공개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과 원고들이 요구하는 이 사건 문서중 어느 것이 일치하는가요.

3-3. 증인이 보기에 일본측의 이러한 요구가 객관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이 되던가요, 만약 근거가 있다고 동의한다면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가) 다

(주신문 7항 관련)

1. 1996년 외교통상부가 다시 한일수교회담 관련문서의 공개를 논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추 배연하다.

2. 그러자 1997.1. 일본정부가 강력하게 비공개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요청을 했다는 것인가요?
우선도 해적 간첩 지극히 과외적거는 비공개로 보등

후생연금 탈퇴금을 지금도 지급 받고 있지요.

22개 권에서 지금 4
작성면치 권내에서 계속
하는

2-3. 그러다가 원고등 피해자들이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등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등 대규모 소송을 계속 제기하자 결국 종전의 입장과는 다른 입장전환을 하게 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는 것을 알지요.

특기는 했지
가... 9

2-4. 증인은 2001.3.22. 일본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전정부의원이 이러한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는 미국에서 최근 계속되고 있는 전쟁중의 일본기업에 대한 소송이 많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영향이 아니냐고 질의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아나요.

등은... 9

3. 이러한 입장 전환에 따라 원고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이 사건 문서의 공개가 결정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지요.

등... 9

4. 왜냐하면 채무자로서 채권소멸을 위해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 있었는가 여부는 그 당시 일본정부가 제공한 금원의 성격에 달려 있고 이는 한일회담과정의 교섭경위를 밝혀야만 누구의 말이 맞는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등... 9

5.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하면 조약문언의 해석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 조약의 교섭기록이나 그 체결시의 사정을 포함한 보충적 해석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0..

(주신문 9항 관련)

1. 일본정부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면 일본의 국익에 훼손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 구체적 내용을 증인은 아나요.

등... 9

2.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의해 만약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당시 일본정부가 원고들에 대한 채무 변제조의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입증

되면 이 사건 정보는 일본정부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것임을 알지요. *모른다.*

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 정보공개에 따라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일본정부는 두려워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2-2. 뿐만 아니라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된 일본의 해설서에 의하면 일본이 제공한 자금공여는 한국의 대일청구에 대한 채무지불의 성격이 결코 아니며 한국정부가 마치 위 자금을 식민지 지배와 관련하여 보상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순전히 (한국내의) 정치적 고려에 불과하다는 종래의 입장이 드러날까 그러한 것이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3. 한편 증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일본이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일제강점기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일본측의 부당한 주장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모른다면, *모른다.*

3-1. 일본측은 1910년의 한일합방조약이 당시에는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주장을 하여 온 사실을 알지요. *○*

3-2. 그런데 일본측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 헌법전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우리 정부의 법통의 근본인 상해임시정부는 당시 유효한 실정법에 위반되는 불법집단이 되지요. *;*

3-3.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요구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는 무관한 정당한 법 집행에 부수한 손실보상요구로 그 청구근원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 원고들의 권리구제에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인 것이지요. *m=값다*

4. 이러한 우리 헌법 질서 하에서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을 일본은 1965년 한
일협정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인은 아는가요.

만약 모른다면,

4-1. 현재 일본과 북한 사이에 국교교섭이 진행 ^{40%} ~~중인데~~ / 그 과정에서 1910

을 했다는 것인가요.

94. 1. 17. 이케라 아키히코
18228

(주신문 10항 관련)

1. 일본정부는 '이 사건이 양국관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 되었으면' 하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정확한 원문의 표현은 무엇인가요.

2. 아울러 이러한 표현을 왜 피고는 비공개를 요청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나요.

3.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과 일본 양국사이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일양국에 많이 있는데 이와 반대로 공개하는 것이 양국관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판단이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4. 오히려 한편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함으로 인하여 고령의 원고들이 누구를 피고로 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야 하는지 불명확한 상황을 지속시키고 일본정부의 모순된 주장을 제대로 법정에서 반박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음을 증인은 아나요.

5. 증인은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를 정화하는 특효약이라는 유엔의 발표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나요.

(주신문 11-13항 관련)

1. 상호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외교관계도 우리 헌법 질서하에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2. 일본정부가 관련 문서중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는 문서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데 무슨 문서를 증인은 이야기 하는가요.

3. 아울러 어떤 근거에서 위 문서가 불리하다고 판단하는가요.

(주신문 14항 관련)

1. 원고들의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 이후에 주한공사, 일본 외무성 북동아과장, 주한일등서기관등 일본의 고위급 외교당국자로부터 한일수교회담 관련 문서의 비공개를 수시로, 계속적으로 요청 받고 있다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그러서 이야기 한다*

2. 아울러 무슨 증거가 있나요. /

3. 이러한 외교적 압력에 대해 우리 외교통상부는 어떻게 대처를 하도록 그 대처방안에 대해 협의를 한 적이 있나요. *주변*

(주신문 15-18항 관련)

1. 증인은 한 나라의 외교정책의 기본은 자국민 보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

2. 또한 외교관계는 그 사안상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가, 관련 외국의 입장을 보호해야 하는가 그 이익이 상충되는 문제가 허다하다는 것을 알지요. *○*

3. 증인이 알기로 자국민의 이익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오로지 외국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예가 언제 어디에서 있었다는 것인가요.

4. 기타 사항 *주익*

⊗ 김성우 씨 ⇒ 인다

* *日本측의 비공개 요구에 대한 증거는 제초불가능하다. ⇒ 북한이*

*핵: 1부 3면의 증거 및 정황상 -
한국인의 입회사실*

法務法人 太平洋

Bae, Kim & Lee

(제3행정부)

항 소 장

원고(피항소인) 신천수 외50

피고(항 소 인) 외교통상부장관

2004. 3. .

피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서울고등법원

귀 중

法務法人 太平洋

Bae, Kim & Lee



항 소 장

원고(피항소인) 별지1 원고(피항소인)목록 기재와 같음

피고(항 소 인) 외교통상부장관
서울 종로구 도림동 95-1 외교통상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15 한국타이어빌딩

(우편번호 : 135-723)

담당변호사 강용현, 곽태철, 문강배, 허보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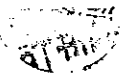
(전화 : 02-3404-0162 팩스 : 02-3404-0108)

위 당사자들간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394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동원에서 2004. 2. 13.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패소 부분에 불복이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주 문

1. 피고가 2002. 9. 23. 별지 공개허용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공개청구목록 기재 문서들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공개대상목록 기재 문서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그 밖의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는 위 판결정본을 2004. 2. 19. 송달받았습니다.)

항 소 취 지

1.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 소 이 유

추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 | | |
|----------|----|
| 1. 항소장부분 | 1통 |
| 1. 납부서 | 1통 |
| 1. 위임장 | 1통 |

2004. 3.

피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범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용현



담당변호사 곽태철



담당변호사 문강배



담당변호사 허보열



서울고등법원

귀 중

상대방용

기 일 미 정

주 심 나

사 건 2004누468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신천수 외 98

피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외교통상부장관

준 비 서 면

2004. 4. .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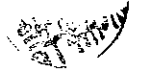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

귀 중

준 비 서 면

사 건 2004누468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신천수 외 98
피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외교통상부장관



피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이하 '피고'라 함) 소송대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은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문서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권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원고들이 이 사건 문서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할 것이고, 과연 그러한지 여부는 이 사건 문서의 내용, 공개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그에 관한 원고들의 구체적 이익 등과 피고가 공개를 거부할 사유로서 드는 외교관계 등의 영향, 국가이익의 실질적 손상의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전제한 후, “위 순번 36번 문서 중 한일회담 일반청구권문제와 순번 48, 55, 56, 57번 문서들은 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들의 일본

이나 일본기업에 대한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유력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의 나이가 많아 그들에게 개인적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는 기간이 그리 오래 남지 않았으며, 위 문서들은 생산된지 30년이 훨씬 지나 그 비밀성을 유지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이 크게 감소되었다고 볼 것인데다가, 위 문서들의 공개로 인하여 일본과의 외교관계에 있어 다소의 불편이 따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일관계의 역사적 특수성에 비추어 이는 국가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이 공개대상문서들 가운데 36번 문서 중 한일회담 일반청구권문제와 순번 48, 55, 56, 57번 문서들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하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한편 이를 비공개함으로 인하여 보호되는 국익은 그들의 위와 같은 이익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판결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원고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전혀 없다는 점 및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 전체가 입게 되는 손해는 수치화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점을 오해하여, 원고들이 얻는 이익과 국가적인 손해에 관한 비교형량에 있어서 잘못 판단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이 사건 정보로 인해 원고들이 얻을 이익과 국가적 이익의 비교

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원고들의 목적과 그 이익

(1) 원고들의 목적은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임

원고들이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일제강점하의 피해자들의 대표로서 일제강점하에 입었던 자신들의 억울한 피해를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받고자 일본 정부 등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제기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원고들의 주장 자체로도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목적은 일본 정부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이 사건 정보와 관계없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원고들의 이익은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일본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원고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2) 원고들 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우리 헌법재판소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1951. 9. 8.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되고, 1954. 4. 28. 효력을 발생한 연합국과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및 1965. 6. 22. 한일 양국 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일괄 타결된 이른바 “대일민간청구권”에 포함된다는 점을 이미 확인하였습니다(1996. 10. 31.자 94헌마 204 결정). 즉, 일제강점기의 불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한 우리 국민의 일본 정부 또는 민간인에 대한 청구권은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 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조약 제172

호, 발효 1965. 12. 18.)에 의하여 완전히 소멸되었고, 다만 개별 피해자들은 위 배상청구권의 보장을 위하여 우리 정부가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 관한 법률(1971. 1. 19. 법률 제2287호로 제정된 것) 및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 관한 법률(1974. 12. 21. 법률 제2685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우리 정부로부터 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3) 소결론

이상과 같이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하여, 원고들의 일본 정부 또는 민간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원고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전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이 사건 정보공개로 인한 국가적인 손해

(1) 상호주의 등 외교관계의 특수성

위와 같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해 원고들의 얻을 이익은 전혀 없는 반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해 국가 즉, 우리 국민 전체가 겪게 될 손해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피고의 2003. 11. 27. 자 준비서면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호주의” 등 외교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국가와 국가 사이의 협조요청은 그 요청의 당부를 떠나서 이를 존중해야 하고, 그와 같은 협조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한 이를 거부하기 어려우며, 만약 거부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상대국의 대

응조치가 반드시 뒤따르게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피고의 위 준비서면 참조).

- (2) 일본 정부의 강력한 비공개 요청 및 위 요청을 거부하였을 경우에 우리나라가 입게 될 손해

그런데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를 강력히 요청하였는바(증인 유의상 증언), 만약 우리 정부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할 경우 우리나라가 국제외교사회에서 큰 비난을 받게 됨은 물론,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 외교당국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는 낙인이 찍히게 될 우려가 있으며, 직접적인 일본 외교당국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게 될과 동시에 그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으로서 우리나라의 중대한 이익이 담긴 비밀문서 중 일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공개될 수도 있어 결과적으로 중대한 국익이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외교문서가 아니라 상대국가로부터 강력한 비공개요청을 받고 있는 문서를 공개할 경우 그로 인한 외교상의 불이익은 그 영향력과 파장의 크기를 감히 측정할 수 없고, 또한 그와 같은 불이익은 단순히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한 원고들의 이익과 국가적인 손해의 비교 교량에 관한 원심판결의 부당성

- (1) 원심판결의 요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원고들이 얻게 될 법률상 이익은 전혀 없고, 단지 원고들의 개인적인 “한풀이”의 도구로서만 작용하게 될 것임에 반하여,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일본국의 외교적 대응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i) 위 순번 36번 문서 중 한 일회담 일반청구권문제와 순번 48, 55, 56, 57번 문서들은 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들의 일본이나 일본기업에 대한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유력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고, (ii) 원고들의 나이가 많아 그들에게 개인적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는 기간이 그리 오래 남지 않았으며, (iii) 위 문서들은 생산된지 30년이 훨씬 지나 그 비밀성을 유지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이 크게 감소되었다고 볼 것인데다가, (iv) 위 문서들의 공개로 인하여 일본과의 외교관계에 있어 다소의 불편이 따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일관계의 역사적 특수성에 비추어 이는 국가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정보 중 일부의 공개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합니다.

(2) 원고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및 원고들 이익의 흠결

원심판결은, 이 사건 정보 중 36번 문서 중 일부와 48, 55, 56, 57번 문서가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여부에 관한 판단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 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일본 정부 또는 일본 민간단체에 대한 개

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점은 헌법재판소 1996. 10. 31.자 94헌마204 결정에 의하여 이미 확인된 사항이므로, 원고들의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여부에 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각 문서들이 원고들에게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위 각 문서들이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의 판시 내용은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3) 원고들의 나이는 원고들의 법률적 이익에 관한 판단사항이 될 수 없음

원심판결은 원고들의 나이가 많지 않다는 점을 판시이유로 들었으나, 정보의 공개에 대한 법률적인 이익의 판단에 있어서 정보공개청구인의 나이가 문제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원고들의 나이가 많아 그 사망시기가 곧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면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심판결과 같이 원고들의 나이를 정보공개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사항으로 삼는다면, 이는 이 사건 정보공개를 통한 원고들의 개인적인 “한풀이”를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 (4) 외교문서의 공개에 관한 기간은 그 중요성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함

원심판결은 이 사건 정보가 30년이 경과되어 그 비밀유지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외교문서보존및공개에관한규칙에서 정한 30년이라는 비공개기간은 어디까지나 일용으로 정한 기간에 불과하며, 30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를 구별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30년이라는 기준을 설정해 준 이유는 30년이 경과되는 경우 그 외교분쟁에 관한 이해관계가 완전히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설사 3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외교문서와 관련된 상대국가에서 그 문서의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고, 그와 같은 비공개요청의 배경에는 그 외교분쟁으로 인한 당사자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는 점이 있다면, 위 규칙에서 정한 30년의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그 문서를 계속 비공개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따라 훼손될 국익에 대한 저평가

원심판결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한 국가적인 피해는 일본과의 관계 및 국민들의 대일감정에 비추어 볼 때 수인가능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판결 판단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일본 정부 등 외교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당할 외교적 불이익을 너무나도 경시한 부당한 판단입니다. 또한,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본 정부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이유로 외교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곤경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제외교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신뢰받지 못할 파트너로 낙인찍히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그

와 같은 일본 정부의 상호주의적 처사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이 명시되지 않은 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어떠한 조치가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은 극소수 외교당국자들만이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 및 국제외교사회에서의 불이익이 국가 전체적으로 수인가능한 정도인지에 관한 판단은 그 누구도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6) 소결론

이상과 같이 원심판결은 이 사건 정보공개가 초래할 수 있는 국가적 불이익을 지나치게 경시한 반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원고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전혀 없다는 점을 망각하여 이 사건 정보에 대한 피고의 비공개결정 중 일부를 취소하였는바, 이는 위에서 자세히 본 바와 같이 부당한 판단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원고들의 항소에 대하여

가. 전부 패소한 원고들의 항소에 대하여

원심판결에서 전부 패소한 원고들의 경우 일본 정부 또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람들로서 원심판결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한 이익을 전혀 갖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에 따

른 원고들의 이익과 국가적인 손해를 비교할 필요조차 없이 이 사건 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일부 패소한 원고들의 항소에 대하여

일부 패소한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정보 중 36번 문서 중 일부와 48, 55, 56, 57,번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 문서들도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한 원고들의 이익과 국가적인 손해를 비교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바, 위 각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 문서들이 원고들의 정보공개청구 목적인 일본 정부 및 민간단체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나머지 문서들의 공개는 원고들의 이익에 보탬이 됨이 없이 국가적인 손해만을 발생시키는 것이어서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통한 원고들의 이익은 전혀 없고, 그에 반하여 국가 전체적으로는 유형·무형의 큰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음이 명백한바, 원고들의 개인적인 반일감정의 충족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소중한 국가적인 이익을 훼손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원고들의 공개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취소되고 원고들의 청구 및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4. 4. .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문강배



담당변호사

허보열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

귀 중

03CA109203/PYH

준 비 서 면

사 건 : 2004누468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 신천수 외 98

피 고 : 외교통상부 장관

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피고 주장의 요지 및 공개이익과 관련한 논란

피고는 이 사건 정보공개를 통한 원고들의 '이익'은 전혀 없고, 그에 반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유형, 무형의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하면서, 단지 원고들의 개인적인 '반일감정의 충족'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소중한 국가적인 이익을 훼손시킬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원고들의 공개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미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공개를 통하여 원고들이 얻을 이익이 '전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를 뿐 만 아니라, 더구나 원고들이 개인적인 '반일감정의 충족'을 위해 이 건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이르러서는 어안이 멍멍하고, 과연 이것이 외교통상부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원고들이 현재 한국에서 뿐 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 법정에서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하고 있는 각종 소송에 있어 핵심쟁점 사항 중 하나인 '개인청구권의 포기여부'와 관련하여 한일협정의 내용 해석을 둘러싸고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바, 이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외교문서에 대한 구체적 내용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이 때문에 원고들이 이 건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이 현재 원고들이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이익은 아주 '구체적'임에 반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손해는 아주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바, 과연 이 때문에 소중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도 된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피고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하여 원고들의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었다는 점이 확인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원고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를 뿐 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한국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으므로 일본과 미국 법정에서도 이를 그대로 원용하여 원고들의 청구가 당연히 기각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타당한 지도 의문이고, 위와 같은 주장은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고 이들을 대변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더구나 원고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반일감정의 충족'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르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과연 외교통상부가 한일협정을 둘러싼 그동안의 논란에 대하여 정말 모르고 있었다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외교통상부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한일협정에 근본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 위와 같은 논란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일협정의 해석을 둘러싼 한국측과 일본측간의 불일치점이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순차적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한일협정을 둘러싼 논란의 배경

우리 정부는 20세기 초 일제강점기를 겪고, 1965년 일본과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위 한일기본조약 및 한일청구권협정의 양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한일협정'이란 용어를 사용)을 맺어 일본과 관계정상화를 한 바 있습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관계정상화>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과거사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일단락이 되어 이로 인해 일본과의 미래가 발목 잡혀서는 아니 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일본, 미국, 그리고 한국에서 일제 피해자들은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을 상대로 끊임없이 재판을 하고 있고,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일본국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수요데모가 600회를 넘어 매주 기네스북 기록을 갱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해마다 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파동으로 한일관계가 파행에 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침략 전쟁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 일본 총리를 비롯한 정치인들의 참배가 거듭되어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참배가 매년 관례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할 것인가. 그것은 침략전쟁을 수행한 일본이 그 전범세력을 청산하지 못한데 주된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정부가 일본과 1965년 관계정상화를 할 때 과거사에 대한 역사인식과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일본측과 명확한 인식의 일치를 보지 못한데 기인하는 점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즉, 1965년 한일협정의 체결 시 양국간에 제대로 된 협정을 맺지 못하였고, 이와 아울러 협정 체결 후에도 편의적 해석을 통해 임시방편적으로 대응하여 왔던 데에 그 문제의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일협정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 양국의 해석상 커다란 불일치점이 있기 때문에 조인의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성립당시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하였기에 한일협정을 맺고 일본과 국제정상화를 했다고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관계정상화는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런 갈등은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긴장요인으로 발전할 위험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일협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고, 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긴급한 과제라 할 것인 바, 이하에서는 특히 법률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한일협정과 관련한 한일간 근본적 불일치점

(1) 한일기본조약의 한국정부의 관할권 및 지위와 관련된 조항과 관련

한일기본조약 제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제 195호(III)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과 관련하여 일본측은 기본관계조약의 적용범위를 정한 것이 아니고 단지 한국정부의 성격만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정부의 확인>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한국측은 이와 달리 해석을 하여 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동원 전 외무부장관은 국회에서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사실을 일본정부가 정식으로 기본조약에서 인정했다”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일본의 기본조약 정신은 일본이 장래에 어떠한 외교관계나 그 외 관계도 북측과 맺지 않겠다는 것을 공약한 것이다”라고 말을 한 사실을 들어 일본 국회에서 조차 그 약속에 대한 추궁이 있었고, 아울러 위 제3조의 해석에 대해서 양국간에 합의의사록이나 교환공문이 없었던 것은 완전한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현재 진행중인 북한과 일본의 수교전제로서 한일기본조약의 제3조와 관련되어 한일간에 아무런 수정이 없이도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제연합총회 결의 제195호(III)를 한국정부의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38선 이남'으로 한정하였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나, 위 결의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고, 가사 그렇게 해석된다 하더라도 위 한일기본조약 제3조의 문언 해석상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가 대한민국정부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그 하나의 근거로 위 결의를 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입니다. 즉, 한일기본조약 제3조의 논의의 중심은 후미의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부분이라 생각되며, 이 경우에 한반도는 그 문언의 의미상 38선 이북을 제외하였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사 위 국제연합총회 결의를 38선 이남으로 한정하였다고 한다면, 위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임에도 이를 조약에 인용하여 그 효력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인지, 나아가 이 경우에도 문언상으로 '총회의 결의 범위 내에서만' 이라든가 후미의 '유일한 합법정부의 범위'를 제한하는 제한어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나, 제한어구는 있지 아니하고 영어표현으로도 'as'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일협정체결당시 '38선 이북에 있는 강원도'에도 한국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위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연합총회결의에 의해서 합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지역에 관해서도 한국정부가 한일협정을 맺었다는 것인지, 맞지 않았다면 위 지역에 대해서는 누가 일본정부와 협상을 할 자격이 있다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일협정에는 한국정부의 지배권이 확장 혹은 축소될 경우를 예상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2조에 의하면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의 ‘무효시점’과 관련하여 한일양국정부^간 주장은 일치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의 주장처럼 구 조약들이 체결당시 유효하였다는 입장을 취한다면, 그 무효 혹은 실효의 시점이 문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정부는 주로 1948. 8. 15. 한국정부가 성립이 된 때로부터 구 조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을 하나, 북한정권의 경우 1948. 9. 9. 성립이 되었음을 고려해 보면 구 조약이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1948. 8. 15. 을 기점으로 하여, 북측과의 관계에서는 1948. 9. 9. 을 기점으로 하여 무효가 되었다는 것인지, 하나의 구 조약이 지역에 따라 분리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근본적인 문제가 대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표로 인해 구 조약이 무효로 된다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표 이전인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정부의 국제법적인 지위가 무엇인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일제강점 하 통치기간동안 일본국적을 소지한 일본국민의 국적문제, 즉 일본 국적법에 의해 당시 한국 및 북측에 살고 있는 국민의 일본 국적이 합법적으로 이탈되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일본국적법에는 사실상의 국적이탈을 인정하는 어떤 조항도 있지 아니 하므로 국적법의 어떤 조항에 의해 국적이탈이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일본에 거류하는 재일동포들의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일을 그 국적상실의 기준으로 보나 우선 일본국적법과의 정합성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일 이전에 한반도 지역의 주민들에게 일본 국적이 있었다고 주장을 한다면 한국전쟁은 일본 국민간의 내전이 되는 것인지 혹은 이중국적 상태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시까지 지속이 되었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구 조약들의 무효와 관련하여 체결당시에는 유효하였다는 일본측의 주장이 인정되려면 이러한 근본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일본측의 구 조약 유효성을 주장하고 이에 따라 한일협정이 체결되었다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1919년 삼일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우리 헌법에 선언되어 있는데, 헌법의 가치 체계하에서 이를 부정하는 주장을 하는 정부와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맺은 조약이 되어 이는 결국 위헌인 조약이 되어 우리 헌법 질서상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됩니다. 만약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 조약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을 통해 위헌성이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위헌판단 이후에 한일협정은 재체결 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현재 한일협정에는 무효조항과 관련하여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바를 알 수 있습니다.

(3) 한일청구권협정의 완전최종해결확인조항 및 청구권주장금지조항과 관련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의 <완전최종해결확인조항>과 3항의 <청구권주장금지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그 내용 및 범위에 대해 일본정부와 한국정부는 서로 다른 해석을 하여 오고 있고, 각 정부조차 일관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어 그야말로 임기응변적인 자의적 해석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한 논란이 바로 원고들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소송에 이르게 된 원인입니다)

이러한 임기응변적인 자의적 해석은 주로 일본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포기한 원폭 피해자등 자국민 전쟁 피해자들의 미국정부에 대한 보상요구 및 일본정부에 의해 포기된 재외 일본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보상요구에 대해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국가와 국가간에 맺은 협정에 의해서는 개인의 권리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들어 자국민의 보상요구를 회피하여 왔고, 이것이 한일청구권협정에서도 거듭 확인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서 소멸된 것은 정부의 외교보호권 뿐이며 피해자들의 권리를 소멸시킨 것은 아니라는 것이 되는데, 이러한 주장이 법정 혹은 언론을 통해 일관되지 않고 있어 그 해석상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관련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권리도 소멸되었다고 종종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를 대비하여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의하면,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 에 관한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되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일양국정부는 이를 모두 회피하여 법적으로 불명확한 상황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일협정과 관련된 문서들이 공개되어 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러한 문서의 공개가 북일간 교섭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한국정부에 문서공개를 하지 말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 이에 동조한 한국정부는 결국 한국의 피해자들인 원고들로부터 피소가 된 상황인 것입니다.

위와 같이 현재 한일청구권협정의 완전최종해결확인조항과 청구권주장금지조항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원고들이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과 미국법정에서 제기한 각종 소송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입장이 참여하고 대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 문서의 공개를 거절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바, 과연 이것이 한일협정을 둘러싼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인지 의문입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반일감정의 충족을 위하여 이진 제소를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4. 결론 - 문제의 해결방향

한일간의 과거사청산 및 기본관계설정은 국제법과 조리에 맞아야 하며, 아울러 더 이상 과거사로 인하여 한일간의 미래가 발목 잡혀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한일협정을 둘러싸고 여러 부분에서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논란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한일협정과 관련된 문서들이 모두 공개되어 철저히 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일청구권협정의 완전최종해결확인조항과 청구권주장금지조항의 취지와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이러한 문서의 공개가 북일간 교섭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한국정부에 문서공개를 하지 말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 이에 우리 정부가 동조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태도가 문제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식인지 의문이며, 특히 피해자들의 고통과 건강 등 피해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에는 비인도적이며 타당하지도 아니합니다.

더구나 일제강점 피해와 관련된 청산문제는 남북의 공통피해를 찾아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이며 민족공동체를 복원하는 통일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냉전시기에 이러한 민족문제를 정권의 문제로 격하시켜 버렸고, 일본정부는 이를 이용하여 어부지리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과오를 북측이 다시 반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본 역시 북측정권의 약점을 다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한일협정관련문서의 공개를 가로 막는 일본정부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따라서 한일협정 체결에 이른 모든 문서를 공개하여 앞서 논의된 제 문제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해결의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2004. 6. 15.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진국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 귀중